

『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0월 12일

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종

나. 제안이유

- 임은동 출신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- 토 지 : 구미시 임은동 산7번지 (1필지 53,950㎡)
- 예정가격 : 1,052,025천원(감정평가금액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거 부지 1건을 매입하는 것임
- 주요 변경내용은
 -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임은동 산7번지 토지 1필지 53,950㎡를 취득(매입)하는 변경안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